#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356호

2. 발 의 자 : 우형찬 의원

3. 발의일자 : 2023. 10. 16.

4. 회부일자: 2023. 10. 23.

# Ⅱ. 제안이유

- 1. 최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로 '자살'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, 서울시의 학생자살예방 관련 조례는 자 살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는 물론 사후지원 협력체계가 상 대적으로 부재한 실정임.
- 2. 이에 학생자살 이후 가족, 주위 학생, 교직원 등의 사후관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사후관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,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, 사전 상담 서비스및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.

## Ⅲ. 주요내용

- 1. 학생자살 예방계획상 사후 대응체계 및 홍보, 캠페인 구축에 대한 예방계획 조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2. 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에 있어 상담 서비스 및 전문가 컨설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- 3. 학생자살 예방계획에서 규정한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을 조항 명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,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대한 학교장의 지원 조항을 신설함(안 제9조).
- 4. 학생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위한 교육감의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 및 확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1조).
- 5.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함 (안 제12조).

## Ⅳ. 참고사항

- 1. 관계법령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- 2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- 3. 기 타
  - 입법예고(2023. 10. 26. ~ 10. 30.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56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살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자살예 방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¹) 코로나19 이후 고립감 확산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4월에 2027년까지 자살 률을 30%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'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(2023~2027년, 관계부처 합동)을 발표하였으며,

서울시교육청은 금년 2월에 수립한 '학생자살예방 추진 계획'에 따라 학생 대상 생명존중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생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서울시 관내 자살 학생은 10월 기준 33명으로 이미 작년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.

<sup>1)</sup> 보도자료: 한국 자살률, OECD 1위…2위와도 압도적 격차 '씁쓸'(머니투데이, 2023.5.28.)

[표] 최근 3년간 서울시 학생 자살 현황

연도	2021				2022				2023(10월 말)			
학교급 유형별	초	중	고	계	초	중	고	계	초	중	고	계
우울증	0	0	6	6	0	1	6	7	0	2	9	11
가정문제	1	2	2	5	0	3	3	6	0	5	3	8
성적문제	0	0	3	3	0	2	4	6	0	0	1	1
이성문제	0	2	0	2	0	0	1	1	0	1	0	1
원인불명	0	1	6	7	0	1	7	8	1	5	3	9
기타	0	1	4	5	0	1	1	2	0	2	1	3
합 계	1	6	21	28	0	8	22	30	1	15	17	33

○ 이와 같이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동 개정조례안이 사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교육환경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생 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### 나. 조문별 검토

- 1) 학생자살 예방계획 등(안 제4조)에 대한 검토
- 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수립·시행하는 학생자살예방 계획에 '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', '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구축'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학교에서 자살 사안이 발생하면 남은 구성원은 심리적 혼란, 불안, 우울, 불면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거나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는바,2)

안 제4조제6호가 사후 대응체계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또 다른 자살 위기를 예방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되고, 안 제4조

<sup>2)</sup> 보도자료: 자살 사후 대응 전문가 양성한다(세계타임즈, 2023.5.11.)

제7호 또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측면<sup>3)</sup>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2) 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(안 제8조)에 대한 검토
-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생자살예방 교육 담당 교사에게 상담 서비스,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 에서의 효과적인 개입 및 대처방안과 대화법 등 게이트 키퍼⁴)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

안 제8조제2항에서 학교장이 담당 교사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3)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(안 제9조)에 대한 검토
- 안 제9조에서는 제목 '가족 등에 대한 <u>지원</u>'을 '가족 등에 대한 <u>사</u> <u>후지원</u>'으로 수정하였는바 동조는 당사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 완화, 생활의 평온 유지를 위한 배려 등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아울러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, 주위학생,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

<sup>3)</sup> 보도자료: 여주시, 시민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확산이 자살 감소 이끌었다(경기헤드라인, 2023.12.1.)

<sup>4)</sup>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, 위급상황에서 자살 위험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·지원하는 사람(네이버 지식백과).

이는 당사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을 통해 자살 사안이 발생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빠른 일상생활 회복과 안정을 통해 또 다른 자살 사안의 발생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4)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(안 제11조)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12조) 에 대한 검토
- 안 제11조에서는 교육감이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·확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안 제12조에서 는 교육감이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회 등 학생 주도의 온·오프라 인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,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홍보·캠페인 및 관계기 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자살예방 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5379, 2023. 10. 27.).
- 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	정진국	입법조사관	김한수		
의안심사팀장	O2) 218O-8263	급급고시근	O2) 218O-8269		